

제7기 금천구 지역보건의료계획 시행결과 및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고

1. 제안이유

지역보건법 제7조 제3항 「시장·군수·구청장은 해당 시·군·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보건의료계획(연차별 시행계획을 포함한다)을 수립한 후 해당 시·군·구의회에 보고하고 시·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한다」는 규정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제7기(2019~2022년)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따른 시행결과 및 제8기(2023~2026년)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

- 지역사회 현황 및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성과와 한계 분석
- 추진전략 3개분야, 추진과제 9개분야, 26개 세부과제 선정
-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23~2026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
- 지역보건의료자원 확충방안 및 전달체계 수립

3. 참고사항

가.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목적

- 지자체에서 지역실정에 맞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·시행함으로써 지역주민에게 제공하는 보건의료서비스의 질 향상 및 주민건강 향상 도모

나. 추진경과

- 제1기(1997~1998) : 개선사업 일부 시·도 수립
- 제2기(1999~2002) : 개선사업 일부 시·군·구 계획수립
- 제3기(2003~2006) : 본격적 시행-핵심사업 도입 개별사업 수립
- 제4기(2007~2010) : 기반구축-지역사회기반 중점과제 도출
- 제5기(2011~2014) : 지원 및 활용-내용분석 통한 사업지원 및 정책적 활용
- 제6기(2015~2018) : 지방자치단체에 보건의료 종합계획으로의 역할 강화
- 제7기(2019~2022) : 맞춤형 통합계획 수립으로 건강관리체계 강화
- 제8기(2023~2026) : 7기 기본 틀 유지, 세부과제 추가로 이행력 제고